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02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용혜인·김성환·이수진

한창민 · 김용만 · 김영환

김재원 · 황운하 · 김준형

복기왕 · 강경숙 · 정혜경

이상식 • 전종덕 • 김남희

소병훈 · 김준혁 · 이학영

정춘생 · 윤종오 · 서미화

차규근 의원(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기준 5,232건이 조사진행 중에 있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로 확인됨.

또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가 왜곡·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기존 위원장의 임기연장을 막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요구가 촉발됨.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미흡한 조사 권한, 피해자 권리보장 및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 파견공무원 위주의 조직구성 등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쇄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3 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또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한 희생 자·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통합·민주발전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으로 하되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21조제2항).
- 다. 위원회의 위원 2인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1인을 비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 라.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안 제45조, 제46조, 제25조제9항).
- 마.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명예회복, 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함 (안 제47조 및 제59조).
- 바.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7조).
- 사. 위원회가 회의록과 진실규명신청에 따른 각하·조사개시·진실규명·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38조).
- 아. 파견공무원이 위원회 직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회 신설, 민간위원 중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함(안 제39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 자. 이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 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

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법률 제 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폭력·학살·의문사·실종 등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왜곡 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희생자·피해 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된 학살·살인·자 의적 처형·자의적 구금·강제실종·외국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살인·의문사·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 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건
- ② 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조(피해자의 권리 등) ① 피해자와 유가족은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 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할 권리
- 2. 정부의 배상·보상계획 및 화해를 위한 조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3. 위령사업 또는 추도사업에 참여할 권리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 자와 유가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 2. 조사의 진행
 -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 미해결 결정
 - 4.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 5.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활동
 - 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1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 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 섭단체에서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3.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인권분야에 10 년 이상 종사한 자
 - 4.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 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 ④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되다.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등의 위원회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 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 제10조(위원의 결격 및 직무배제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다)

-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사건 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 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수 있다.
-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 등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사무처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장기미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조사 부서를 둔다.

- ⑥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 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한다.
 -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실규명 등의 과정, 피해자의 권리 보장,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 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숙의공론화장의 참여 인원은 진실규명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상임위원이 각 절반씩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 ④ 기타 숙의공론화장의 구성방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 ③ 위원회 직원간 진상규명 조사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협의회를 둔다.
- 제1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진실규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21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신청의 방식) ① 제21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제24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조사의 범위는 의결로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 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관련 사건에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 제25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 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 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⑥ 제4항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①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 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 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직원법」,「군사기밀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규정을 이유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자료 및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

에는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제9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가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1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3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1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해"라 한다)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유해발굴단을 둔다.
 - ②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농작물,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고, 추도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발굴에 따라 토지등의 출입이나 일시사용 또는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의 제거·변경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단의 설치·운영, 제2항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과 그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

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 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직원이 행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 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

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 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 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위원회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를 준용한다.
-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9항을 준용한다.
- ④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 25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31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 제32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 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아니한다.
- 제33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검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5조제9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 제35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36조(진실규명 미해결 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미해결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의한 각하 결정, 제24조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35조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제36조에 의한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1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5조에 따른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 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5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국민 화해와 민주 발전을 위하여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 수행 중 명백하고 현저한 공적을 이룬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을 거쳐 해당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 승진을 요청할 수 있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⑥ 파견공무원은 위원회 직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제40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 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5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

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4.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3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 · 관리한다.
 -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 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 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5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 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6조(고발 및 수사 의뢰)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범죄 혐의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 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제 21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제47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고, 명예회복·재발방지·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8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과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 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0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 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 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5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 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제52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53조(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간의 화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 · 관리
 -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제5장 보칙

제5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 또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6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8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

-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 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21조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

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5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 2. 제56조를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 3. 제5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 ④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형의 감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

- 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 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 거나 방해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 4. 제48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 5. 제5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

- 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있다.
- 제8조(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 제9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